

의안번호	제 722 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9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유 상 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2일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유상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2
----------	-----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2일

발 의 자: 유상용, 이정범,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의원

1. 제안이유

- 지난 1월 충남 태안군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일가족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관심과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교육부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진단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2021년 3,111명 → 2022년 3,655명 → 2023년 3,855명), 우리 충청북도 같은 맥락에서 소아 당뇨병 학생이 ‘2021년 97명 → 2022년 117명 → 2023년 142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건강 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 권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라.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마. 지원사업(안 제5조)

바. 지원 범위·신청·방법(안 제6조)

사. 실태조사(안 제7조)

아. 사무위탁(안 제8조)

자.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당뇨병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당뇨병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

3. 당뇨병 학생 보호·관리체계 구축 방안
4. 재원 확보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5. 당뇨병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
6.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의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학생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
2. 당뇨병 학생 인슐린 투약 관련 지원
3. 당뇨병 학생의 안전한 치료·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4. 시험 등 평가 시 혈당 확인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당뇨병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허용
5. 당뇨병 학생·보호자 대상 건강·학습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6.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연수
7.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범위·신청·방법) 당뇨병 학생을 위한 의료비 지원 범위와 지원 신청,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제8조에서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2012. 3. 21.>
5. 삭제<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2. 1. 26.>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6. 8.>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신설 2021. 6. 8.>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12. 1. 26.]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 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교사 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 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보건교사의 직무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영양지도 및 관리
-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21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 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2. 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 의료급여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4호, 2024. 12. 23., 일부개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내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지원 및 환경구축, 연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3. 관련조문

- 안 제5조(지원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2029년까지 5년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산출내역의 단가는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적용
-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기 추진 중인 사업은 비용추계에 포함하지 않으며, 2025년부터 기존 사업 확대 추진(2024년 예산액 총 1,790천원)
- 산정기준 (2024. 9월 기준)
 -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 지원(당뇨 관리를 위한 의료 치료/123명, 1인당 300천원)
 - 학교 응급키트 지원 <혈당측정기, 인슐린 주사용품, 소독용품 등> (28교/교당 1,000천원)

- 인슐린 집중 환경구축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15교/교당 2,000천원)

나. 추계 결과

-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474,500천원(연 94,900천원)
 -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 지원: 연 36,900천원
 - 학교 응급키트 지원: 연 28,000천원
 - 인슐린 집중 환경구축 지원: 연 3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100%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94,900	94,900	94,900	94,900	94,900	474,500
건강관리 지원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184,500
학교 응급키트 지원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140,000
인슐린 접종 환경구축 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94,900	94,900	94,900	94,900	94,900	474,5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